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규 정	개 정(안)
I. 목적	I.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위반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II. 용어의 정의	II.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u>도급한도액</u> , 자산총액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u>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u> , 자산총액
①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u>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종업원수</u> 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u>“소득세징수액집계표”</u> 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2)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 <u>하도급계약체결시점</u>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97년도까지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u>하도급계약체결시점</u>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③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시점에 적용되는 <u>도급한도액</u> 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 “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u>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u>
④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u>하도급계약시점</u> 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라. <u>하도급계약체결시점</u>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⑤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연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마.

현 행 규 정	개 정(안)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동 처분 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 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생략)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현행과 같음)
6. 과실상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u>하자보증의무</u> 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⑤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둘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6. 과실상계 (현행과 같음) 〈삭제〉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하자보증의무 등을</u> 라. <u>(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u> 의하여.....
III. 공정화지침	III.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2조 제6항)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수리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OEM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법 제2조(정의)제6항)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OEM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현 행 규 정	개 정(안)
〈예시〉 ① ~ ③ (생 략)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나)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자동차, 기계, 전자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 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생 략) (다) (생 략)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 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②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예시〉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위탁하 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바) ~ (사) (생 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건축설계업의 법적용 예시 ① (생 략) ②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 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건축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 신 설 >	〈예시〉 ① 수리에 필요한 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바) ~ (사) (현행과 동일)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 (다) (현행과 동일)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건축설계업의 법적용 예시 ① (현행과 동일) ② 제32조제1항 및 제91조 의3제1항 ③ 제91조의3제2항 나. 수리위탁의 범위(법 제2조(정의)제8항)

현 행 규 정	개 정(안)
	<p>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건설위탁의 범위(법 제2조제8항, 시행령 제1조의 2)	<p>다. 건설위탁의 범위(법 제2조(정의)제9항, 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p> <p>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1) 건설업자의 건설위탁</p> <p><u>건설업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각 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경우</u></p> <p>< 신 설 ></p> <p>< 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토공사업 면허만을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일부 시공을 의뢰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p>< 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p>(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p> <p>(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p> <p>< 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동일)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에는 <p>(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p> <p><u>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p> <p>(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p> <p><u>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협회를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p> <p>(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p>

현 행 규 정	개 정(안)
	<u>소방법 제52조제1항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2)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u>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기준을 갖춘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u>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3)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u>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법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제21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u>.....</u> <u>.....폐기물관리법 제33조.....</u> <u>.....</u> <u>.....</u> <u>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4)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한 지정업자, 도시가스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제15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관련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u>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u>
(5)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u>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법령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u>	<u>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u>
(6)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생 략)	(9)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2) (현행과 같음)

현행 규정					개정(안)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단위: 명, 억원)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① 매출액, 종업 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	100	250	45	120	○
② 매출액이 2배	60	80	40	35	○	60	80	40	35	○
③ 종업원수가 2배	19	25	10	8	✗ ¹⁾	19	19	10	8	✗ ¹⁾
④ 종업원수가 2배	40	150	18	80	○	40	150	18	80	○
	30	18	13	14	✗ ¹⁾	30	18	13	14	✗ ¹⁾

(단위: 명, 억원)					(단위: 명, 억원)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단위: 명, 억원)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① 매출액, 종업 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	100	250	45	120	○
② 매출액이 2배	60	80	40	35	○	60	80	40	35	○
③ 종업원수가 2배	19	19	10	8	✗ ¹⁾	19	19	10	8	✗ ¹⁾
④ 종업원수가 2배	40	150	18	80	○	40	150	18	80	○
	30	18	13	14	✗ ¹⁾	30	18	13	14	✗ ¹⁾

주1) 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나.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의 경우

(1) (생략)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 명, 억원)					(단위: 명, 억원)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단위: 명, 억원)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① 매출액, 종업 원수가 2배	200	550	90	230	○	200	500	90	120	○
② 매출액이 2배	120	400	70	180	○	120	400	70	35	○
③ 종업원수가 2배	29	37	20	16	✗ ¹⁾	29	28	20	12	✗ ¹⁾
④ 종업원수가 2배	90	310	40	160	○	90	310	40	160	○
	46	28	21	17	✗ ¹⁾	46	28	21	14	✗ ¹⁾

주1) 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3.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법제3조, 시행령2, 3조)
적법하게 서면을 교부하였거나 서류를 보존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 ⑤ (생략)

(단위: 명, 억원)					(단위: 명, 억원)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단위: 명, 억원)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① 매출액, 종업 원수가 2배	200	500	90	120	○	200	500	90	120	○
② 매출액이 2배	120	400	70	35	○	120	400	70	35	○
③ 종업원수가 2배	29	28	20	12	✗ ¹⁾	29	28	20	12	✗ ¹⁾
④ 종업원수가 2배	90	310	40	160	○	90	310	40	160	○
	46	28	21	14	✗ ¹⁾	46	28	21	14	✗ ¹⁾

주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적법한 서면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 ⑤ <삭제>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

현 행 규 정	개 정(안)
	<p><u>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2) <u>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3) <u>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4) <u>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5) <u>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6) <u>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계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u></p> <p>(7) <u>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u></p> <p>(8) <u>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허위서면교부로 본다</u></p> <p>(9) <u>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히 갖춘 서면(예: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u></p> <p>(10) <u>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가) <u>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 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u></p> <p style="padding-left: 2em;">(나) <u>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u></p>

현 행 규 정	개 정(안)
	<p>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p> <p>(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본다.</p> <p>(라)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본다.</p>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한 저가 하도급기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신 설〉	※ “직접공사비”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을 기준으로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하되, 경비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비목(예시: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예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제외한다.
나. (생 략)	(8)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나. (현행과 같음)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발주자나 고객이

현 행 규 정	개 정(안)
<p>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p> <p>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p> <p>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p>	<p>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p> <p>가. (현행과 동일)</p> <p>(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p> <p>〈예 시〉</p> <pre> graph LR A[99.4.1.] --> B((4.7)) B --> C((● 4.16)) C --> D((◇ 4.30)) D --> E((○ 5.20)) C -.-> E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날 <p>- 이자부과 일수 계산 예</p> <p>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수(34일)-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 일수(23일)=11일</p> <p>(2) 한다.</p> <p>〈예시 1〉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p> <p>○ 예시에 나타나는 날짜를 '94에서 '98로 개정</p>
<p>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p> <p>〈예 시〉</p> <p>총계약금액 : 5,000만원</p> <p>선 급 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p> <p>선급금 지급기일 : '94. 4. 1st</p>	

현 행 규 정						개 정(안)						
구 분	기성금액		당 해 선급금 2』	선급금 기산일 3』	선급금 지연일수 4』	지연 이자 5』						
	일자	금액										
1회기성	'94.4.30	1,000	200	94.4.2	29	4						
2회기성	5.31	1,000	200	4.2	60	8						
3회기성	6.30	1,000	200	4.2	90	12						
4회기성	7.31	1,000	200	4.2	121	17						
5회기성	8.31	1,000	200	4.2	152	21						
계		5,000	1,000			62						

주 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2』 선급금 × 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3』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지급일 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 × 25% × 선급금지연일수/365일

〈 신 설 〉

(단위 : 만원)

○ 예시에 나타나는 날짜의 연도를 '94에서 '98로 개정

주 5』 당해 선급금 × 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예시 2〉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선 급 금 : 2,000만원(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1998.4.30

선급금 지급금액 : 1,000만원 ('98.5.10일 현금 지급)

⇒ 지급지연일수 : 10일

○ 선급금중 1,000만원(공사금액의 10%)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 6.8만원

- 1,000만원 × 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10(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365 = 6.8만원

○ 선급금중 1,000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 60.8만원

(단위 : 만원)

구 분	기성금액		당 해 선급금 1』	선급금 기산일 2』	선급금 지연일수 3』	지연 이자 4』						
	일자	금액										
1회기성	'98.5.31	2,000	200	98.5.1	31	4.2						
2회기성	6.30	3,000	300	"	61	12.5						
3회기성	7.31	1,000	100	"	92	6.3						
4회기성	8.31	2,000	200	"	123	16.8						
5회기성	9.30	2,000	200	"	153	21.0						
계		10,000	1,000			60.8						

현 행 규 정	개 정(안)
	<p><u>주 1』 미지급한 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u></p> <p><u>2』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u></p> <p><u>3』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u></p> <p><u>4』 당해 선급금×25% (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선급금 지연일수/365일</u></p>
<p>다.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p> <p>(1) (생략)</p> <p>(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p> <p>① ~ ③ (생략)</p> <p>(나) (생략)</p> <p>〈신설〉</p>	<p>(3)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삭제〉</p> <p>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p> <p>(1)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p> <p>〈예시〉</p> <p>A라는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 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7. 내국신용장의 개설(법 제7조)</p> <p>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미개설행위로 보지 않는다.</p>	<p>7. 내국신용장의 개설(법 제7조)</p> <p>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현 행 규 정	개 정(안)
<p>① ~ ② (생 략) 나. (생 략)</p> <p>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① ~ ⑦ (생 략) < 신 설 ></p> <p>< 신 설 ></p>	<p>(1) ~ (2)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p> <p>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현행과 동일)</p> <p>가. ~ 사. (현행과 동일) 아. 원사업자가 다른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자.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p>
<p>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원사업자의 부당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① ~ ③ (생 략) < 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p>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p>
<p>10.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① ~ ③ (생 략) ④ 계속적 빌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⑤ ~ ⑩ (생 략) < 신 설 ></p>	<p>10.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획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 차. (현행과 같음) 타.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계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p>

현 행 규 정	개 정(안)
〈 신 설 〉	파.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 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 신 설 〉	하.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나. (생 략)	〈 삭 제 〉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가. ~ 다. (생 략) 〈 신 설 〉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 신 설 〉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규 정	개 정(안)																				
(적용기준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도급대금 수령</th> <th colspan="2">하도급대금 지급</th> </tr> <tr> <th>수령일자</th> <th>결제비율 (현금:어음)</th> <th>지급일자</th> <th>현금결제 비 율</th> </tr> </thead> <tbody> <tr> <td>2. 1</td> <td>50 : 50</td> <td>1. 8 3. 5 4. 5</td> <td>예외 가능 50%이상 50%이상</td> </tr> <tr> <td>5. 1 5. 15 6. 1</td> <td>50 : 50 60 : 40 20 : 80</td> <td>7. 1</td> <td>43%이상¹⁾</td> </tr> <tr> <td>8. 1</td> <td>40 : 60</td> <td>9. 1</td> <td>40%이상</td> </tr> </tbody> </table>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 (현금: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 비 율	2. 1	50 : 50	1. 8 3. 5 4. 5	예외 가능 50%이상 50%이상	5. 1 5. 15 6. 1	50 : 50 60 : 40 20 : 80	7. 1	43%이상 ¹⁾	8. 1	40 : 60	9. 1	40%이상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 (현금: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 비 율																		
2. 1	50 : 50	1. 8 3. 5 4. 5	예외 가능 50%이상 50%이상																		
5. 1 5. 15 6. 1	50 : 50 60 : 40 20 : 80	7. 1	43%이상 ¹⁾																		
8. 1	40 : 60	9. 1	40%이상																		
<p>주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50+60+20)/3$)</p> <p>※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p>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p> <p>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13.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제5항)</p> <p>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p>																					

현 행 규 정	개 정(안)
〈 신 설 〉	<p>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p>
〈 신 설 〉	<p>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 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 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p> <p>다.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 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p>
〈 신 설 〉	<p>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 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 신 설 〉	<p>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법 제13조의2)</p> <p>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p> <p>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 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 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미 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 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 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 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 아도 된다. 다만, 대금지급보증의무 대상사업자</p>

현 행 규 정	개 정(안)
	<p>가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승계 당시 참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p> <p>라. 원사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들이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각기 상이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 하도급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제조합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한다.</p>
<u>12.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u> <p>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① 수급사업자가 <u>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u>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p> <p>② <u>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u>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p> <p>③ (생 략)</p>	<u>15.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u> <p>가.<u>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u>.....</p> <p>나. <u>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u>.....</p> <p>다. (현행과 같음)</p>
<u>1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u> <p>가. ~ 다. (생 략) < 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u>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u>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p> <p>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바.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p>

현 행 규 정	개 정(안)
<p>〈 신 설 〉</p> <p><u>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u> (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가. 제조업부문 사건인 경우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분쟁</p> <p>나. (생 략)</p> <p>다. 건설업자의 제조위탁에 따른 사건중 건설업자의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미만인 경우의 분쟁</p> <p>라.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p> <p>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건도급한도액 순위 1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 또는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p>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p> <p>마. (생 략)</p> <p>바.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p> <p>사. 법 제2조제8항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간에 위탁한 사업중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p> <p>아. 건설업자가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p> <p>자. 가. ~ 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p> <p>① ~ ③ (생 략)</p> <p>〈 신 설 〉</p>	<p><u>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u></p> <p>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p> <p><u>1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u> (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p> <p>가. (현행과 같음)</p> <p>(1) 제조위탁의 경우</p> <p>(가)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p> <p>(2) 건설위탁의 경우</p> <p>(가) 건설산업기본법.....</p> <p>① ·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토건도급한도액) 순위 1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 ·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 삭 제 〉</p> <p>(나) 정보통신공사업법,</p> <p>(다)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한 사업중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p> <p>(라)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의 범위등)제6항</p> <p>.....</p> <p>나. (1) 및 (2)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피조사인의 법위반회수가 과거(신고접수일</p>

현 행 규 정	개 정(안)														
④ (생 략) 〈신 설〉	<p><u>기준) 1년간 3회이상인 경우</u> <u>(5) (현행과 같음)</u></p> <p><u>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된 사건은 협의회로부터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인지일로 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다.</u></p>														
〈신 설〉	<p><u>18.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u></p> <p><u>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신고건</u></p> <p><u>(1) 신고내용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심사절차 불개시</u></p> <p><u>(2) 신고내용에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인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조사 및 조치</u></p> <p><u>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신고건</u></p> <p><u>(1) 특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 일반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처리</u></p> <p><u>〈입증자료 예시〉</u></p> <p><u>①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의 경우 : 지급되어야 할 금액 근거와 기수령한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내역(세금계산서,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그 금액, 수령일, 만기일 등)</u></p> <p><u>② 선급금 미지급행위의 경우 :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지급대상 공사명, 선급금지급비율, 해당 하도급공사계약서 등</u></p> <p><u>(2) 구체적인 법위반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거래내용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요구한 경우 : 심사절차 불개시</u></p>														
〈신 설〉	<p><u>19.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 제25조)</u></p> <p><u>가. 시정조치유형별 접수관리</u></p> <p><u>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접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u></p> <p><u>〈시정조치 유형별 접수〉</u></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조정</th> <th>경고</th> <th>시정권고</th> <th>시정명령</th> <th>과징금</th> <th>고발</th> </tr> </thead> <tbody> <tr> <td>접수</td> <td>0.5</td> <td>1.0</td> <td>1.5</td> <td>2.0</td> <td>2.0</td> <td>2.5</td> </tr> </tbody> </table> <p><u>※ 동일내용에 대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다른 시기에 신고하여 처리한 경우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며, 1개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 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다.</u></p>	유형	조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접수	0.5	1.0	1.5	2.0	2.0	2.5
유형	조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접수	0.5	1.0	1.5	2.0	2.0	2.5									

현 행 규 정	개 정(안)
	<p>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p> <p>나. 법위반사실 공표</p> <p>(1) 요건</p> <p>(가)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사건처리 당시 법위반사실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동기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p> <p>① 과거 1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 별 부과점수 누계가 4점이상이 되는 경우</p> <p>②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 별 부과점수 누계가 6점이상이 되는 경우</p> <p>③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 별부과점수 누계가 4점이상이 되는 업체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p> <p>(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종사건처리 당시 다음에 열거된 법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 최초서면 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미보증행위, 물품등의 구매강제행위,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부당반품행위,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15.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법 제25조제4항)	<p>(2) 공표방법</p> <p>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p> <p>다.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p> <p>(1) 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조치한다.</p> <p>(2)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을 하고 불이행 시 고발조치한다.</p>

현 행 규 정	개 정(안)
〈신 설〉	<p>(3)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한 후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p> <p>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p> <p>(1) 요건</p> <p>(가)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p> <p>다만,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당해 위반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p> <p>(다)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20점(시정명령 5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p> <p>(2) 제외 대상</p> <p>상기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간 법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당해업체가 처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p>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p> <p>(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p> <p>(가) 감점 대상</p> <p>(i)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p> <p>(ii)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p> <p>(나) 감점 방법</p> <p>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이</p>
〈신 설〉	

현 행 규 정	개 정(안)
	<p>하 같다) 3년간 상기의 표창을 수상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2점씩 감점 처리</p> <p>(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한국공정경쟁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3시간이상의 하도급관련 특별교육</p> <p>(2)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 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p>
〈 신 설 〉	<p>바.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전절차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p>
16.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제1항) 과태료는 총거래금액 중 법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p>20.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p>
부 칙	<p>부 칙</p> <p>① 이 지침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거 1993년 3월 31일이전에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에 따른 할인율(연리 13.5%)을 적용하고 1993년 4월 1일이후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p> <p>① 이 지침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자하도급신고사건에대한처리기준, 하도급법 상서면교부의무에대한심사기준,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심사기준, 하도급법위반사건의시정명령이행확인및고발절차기준, 하도급법상습위반자에대한정부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기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경유한사건관리방안,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처리기준은 이 지침을 시행한 날부터 폐지된다.</p>